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64 발의연월일: 2023. 8. 10.

발 의 자:김용판·권명호·백종헌

최춘식 • 박덕흠 • 박대수

최재형 • 이인선 • 서범수

하영제 • 박성민 • 김영식

김성원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큰 사상자를 낸 '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'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 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.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,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있으면,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등 과거의 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법의 취 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'살인 예비죄 (「형법」 제255조)'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 질러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음.

이에 「형법」 제255조 '살인 예비죄'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,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,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(안 제2조제1항제1호, 제8조의2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1호 중 "제외한다)의 죄"를 "제외한다), 제255조[예비, 음 모(豫備, 陰謀)]의 죄"로 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,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에서	제2조(적용 범위) ①		
"특정강력범죄"란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			
말한다.	··		
1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	1		
의 죄 중 제250조[살인·존속			
살해(尊屬殺害)], 제253조[위			
계(僞計)등에 의한 촉탁살인			
(囑託殺人)등] 및 제254조(미			
수범. 다만, 제251조 및 제252			
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	<u>제외한다), 제255조[예</u>		
<u>죄</u>	비, 음모(豫備, 陰謀)]의 죄	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	
① · 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		
	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		
	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		
	습으로 하되, 성명 및 나이 등		
	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		
	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		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